

선 람	기관의 장



제 631 호

2005년 5월 4일 수요일

차 례

조 례

- 인천광역시남동구조례제762호(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 ... 3
- 인천광역시남동구조례제763호(인천광역시남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 5
- 인천광역시남동구조례제764호(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 7
- 인천광역시남동구조례제765호(인천광역시남동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 10
- 인천광역시남동구조례제766호(인천광역시남동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13

규 칙

- 인천광역시남동구규칙제636호(인천광역시남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 · 24
- 인천광역시남동구규칙제637호(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 · 26
- 인천광역시남동구규칙제638호(인천광역시남동구재난관리기금운용 · 관리조례시행규칙) 32

훈 령

- 인천광역시남동구훈령제215호(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공무원정원규정일부개정규정) 48
- 인천광역시남동구훈령제216호(인천광역시남동구상근인력관리규정일부개정규정) 56

공 고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제2005-315호(보상계획열람공고) 60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제2005-316호(특별정수주민세송달불능분공시송달공고) 63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제2005-317호(소득할주민세송달불능분공시송달공고) 66

남동구보건소공고

- 인천광역시남동구보건소공고제2005-12호(검사시약및재료구입전자입찰공고) 69

회 람								
--------	--	--	--	--	--	--	--	--

조 려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정례회의운영
에관한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윤 태 진

2005년 5월 4일

인천광역시남동구 조례 제 762 호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를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4조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회의일수) 법 제4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연간 회의
총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를 합하여 80일을 초과할 수 없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의 개정(2005.1.27, 법률 제7362호)으로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과 관련한 법 제41조 제2항이 삭제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법 제4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연간 회의 총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를 합하여 80일을 초과할 수 없다.”로 개정하여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의 기간을 조정함. (안 제4조)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윤 태 진

2005년 5월 4일

인천광역시남동구 조례 제 763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2항중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13호” 내지 “제15호”를 각각 “제14호” 내지 “제16호”로 한다

13. 개별주택가격에 관한 업무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안이유

- '05년부터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에 의하여 주택을 토지건물 통합시가로 평가하여 과표로 산정하는 주택가격 공시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주택가격 조사·산정의 신규업무 수행을 위한 전담기구의 업무를 신설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제6조제2항 총무국장의 분장사무중 “개별주택가격에 관한 업무” 신설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윤 태 진

2005년 5월 4일

인천광역시남동구 조례 제 764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제1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집행기관 : 709명

3. 총 계 : 728명

제3조 관련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당시 집행기관 정원 중 일제강제동원 피해접수업무 수행에 따른 1명(행정7급)의 존속기한은 200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별표】

기관별·직급별 정원

기관별 직급별	현행						개정안					
	총계	본청	의회 사무국	직속 기관	출장 소	동	총계	본청	의회 사무국	직속 기관	출장 소	동
총계	723	453	19	40	16	195	728	458	19	40	16	195
정무직 계	1	1					현행과 같음					
구청장	1	1										
일반직 계	626	397	11	36	15	167	631	402	11	36	15	167
3급	1	1					현행과 같음					
4급	5	3	1	1								
5급	41	16	2	5	1	17						
6급	115	87	3	5	3	17						
7급	181	126	5	7	4	39	183	128	5	7	4	39
8급	193	121		10	5	57	196	123		10	6	57
9급	90	43		8	2	37	90	44		8	1	37
별정직 계	1	1					현행과 같음					
7급상당	1	1										
기능직 계	95	54	8	4	1	28						
기능6급	3	3										
기능7급	5	4				1						
기능8급	12	10	2									
기능9급	25	16	5	1		3						
기능10급	50	21	1	3	1	24						

□ 제안이유

- '05년부터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에 의하여 주택을 토지건물 통합 시가로 평가하여 과표로 산정하는 주택가격 공시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주택가격 조사·산정의 신규업무 수행을 위한 전담기구의 인력보강
- 특별법에 의거 일제강제동원피해 접수 등 신규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담인력 보강

□ 주요내용

- 집행기관 정원(안 제2조 제1호)
 - 704명 ⇒ 709명(5명 순증)
 - 행정7급 1명, 세무7급 1명, 행정8급 1명, 세무8급 2명
- 총계 정원 (안 제2조 제3호)
 - 723명 ⇒ 728명 (5명 순증)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남동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윤 태 진

2005년 5월 4일

인천광역시남동구 조례 제 765 호

인천광역시남동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남동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남동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를 “인천광역시 남동구 부동산 평가 위원회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중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4조제3항”을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51조”로 하고, “인천광역시남동구토지평가위원회”를 “인천광역시남동구부동산평가위원회”로 한다.

제2조제3항중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를 “위원 중 연장자가”로 한다.

제4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개최 3일전까지 의안을 첨부하여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간사와 서기는 안전에 따라 공시지가에 관한 사항은 지가업무 담당과장과 담당으로 하고, 주택가격에 관한 사항은 주택가격업무 담당과장과 담당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인천광역시남동구토지평가위원회가 행한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한 인천광역시남동구부동산평가위원회가 행한 행위로 본다.

□ 제안이유

- 상위법인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이 부동산보유세제 개편과 관련하여 현행 공시지가제도 외에 주택가격공시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로 개정(법률 제7335호 2005.1.14)됨에 따라 개정된 법률에 부합되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운영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이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위원회의 명칭을 인천광역시남동구부동산평가위원회로 개정하고 제명을 인천광역시남동구부동산평가위원회운영 조례로 개정함 (안 제1조)
-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사고가 있을때 직무 대행자를 위원 중 연장자로 명시 (안 제2조 제3항)
- 심의 안전에 대한 충분한 사전검토를 위하여 회의 안전을 첨부하여 회의개최 3일전까지 통지하도록 규정 신설(안 제4조 제2항 신설)
-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 안전에 따라 소관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간사와 서기를 담당토록 변경(안 제6조 제2항)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윤 태 진

2005년 5월 4일

인천광역시남동구 조례 제 766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과 동법시행령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중화장실등이라 함은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의한 공중화장실·개방화장실·이동화장실·유료화장실을 말한다.

제3조(적용의 범위) 법 제3조 각호의 규정에서 구의 조례로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에서 정한 관계법령의 적용범위를 따른다.

제4조(설치·관리자의 책무) 공중화장실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에게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시설의 설치기준 및 유지·관리

제5조(설치기준)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조 별표 규정에서 정한 이외의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필요시 화장실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4. 그 밖에 다양한 주제의 화장실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록 에어타올(페이퍼타올)·그림·사진·화분 등을 설치할 수 있다.
5. 장애인용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위탁관리 등) ①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관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유지·관리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7조(관리인의 교육) ① 구청장은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6조(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화장실 관리인(이하 "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한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8조(편의용품의 비치·제공)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호의 편의용품을 비치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의 여건상 편의용품의 비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화장지(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
2. 세정제
3. 방향제
4. 탈취제 및 소독약품

제9조(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1. 1일 3회 이상 청소를 하여야 한다.
2. 대·소변기 및 배수구 등에 대하여는 요석 등으로 인한 부식방지를 위하여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도색이 필요한 화장실의 경우에는 연1회 이상 도색을 하여야 한다.

제10조(관리대장의 비치)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시설의 유지·관리상황과 정비 상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3장 개방화장실 지정·운영

제11조(화장실의 개방) ① 구청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다수인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을 개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방하는 화장실 중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개방이 어려운 건물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에 한하여 개방할 수 있다.

제12조(개방화장실의 지정) ① 구청장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화장실

중 다수인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장소와 시설의 화장실에 대하여 개방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한 화장실은 공중이 이를 알수 있는 위치에 개방화장실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제13조(편의위생용품의 지원) 구청장은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편의위생용품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장 이동화장실 설치·관리

제14조(이동화장실의 설치) 구청장은 관할 구역안에서 정하는 행사 등으로 다수인이 모이는 경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행사를 주관하는 자에게 이동화장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대체화장실이 있거나 지정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5조(이동화장실의 설치·관리) ①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이동화장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감안한 적합한 수의 남·여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 되도록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
3. 악취 발생 예방을 위한 환풍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이동화장실임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이동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청결하고 깨끗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2. 청결이 유지되도록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악취의 발생과 파리, 모기 등 해충의 방지를 위하여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하여야 한다.
4.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편의용품을 비치·제공하여야 한다.

- ③ 이동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행사 등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동화장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5장 유료화장실 신고

제16조(유료화장실의 신고) ① 유료화장실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 7조 및 영 제6조 별표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한 후 구청장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전반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포괄적으로 입장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5일 이내(사용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일로부터 15일전)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신청서에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이 유료화장실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시설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7조(준수사항)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의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편의용품을 비치·제공하여야 한다.
2.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다.
3. 관리인을 두어 상시 근무토록 하여야 한다.
4. 기타 화장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6장 과태료 부과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금액은 [별표 1호]의 부과기준과 같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공중화장실은 이 조례에 의해 설치된 것으로 본다.

【별표 1】

과태료 부과기준(제18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사항이 2이상 일때에는 그중 중한 처분에 의한다.
- 나. 과태료 처분대상자의 변동시, 변동전에 행하여진 과태료 처분의 효과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 있다.
- 다. 위반행위횟수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반복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2. 개별기준

(단위 : 만원)

1. 공중화장실등의 설치명령에 불응한때	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 법제6조 공중화장실 설치명령 불응		20	40	60
나. 법제10조 이동화장실 설치명령 불응		10	20	30
2. 유료화장실 표지부착 및 설치·관리기준을 위반한때	법 제21조 제1항 제2호			
가. 법제11조 제2항의 표지부착 위반		10	20	30
나. 법제11조 제4항 설치·관리기준 위반		20	30	40
3.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때	법 제21조 제1항 제3호			
가. 법제7조의 설치기준을 위반한때		20	40	60
나. 법제8조의 관리기준을 위반한때		10	20	30
4. 보고등의 요구에 불응한때	법 제21조 제1항 제4호	10	20	30
5. 공중화장실등에서의 금지행위를 위반한때	법 제21조 제2항	5	10	20

【별지 제1호 서식】

공중화장실 관리카드

전 경 사 진

소재지						화장실 명칭					
지역구분				설치 년도		관리책임 공무원	소속				
설치 및 관리주체	설치주체						직급				
	관리주체						성명				
관리인		(전화번호:)				월평균 이용인원					
규모	부지 (㎡)	화장실 면적(㎡)	대변기 수			소변기 수		대변기 유형		사용료	
			남	여	장애인	성인용	유아용	동양식	서양식	유료	무료
편의시설 내역	세면 시설	난방 시설	냉방 시설	환풍기	화장지 (자동 판매기)	비누	수건 (에어 타올)	탈취제 (방향제)	청소도구함		기타
									내부	외부	
시설관리 내역	년월일	관리사항	금액 (천원)	년월일	관리사항	금액 (천원)	년월일	관리사항	금액 (천원)		

【별지 제2호 서식】

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										처리기간	
										3일	
신청인	상 호(명칭)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시설현황	소재지				관리주체						
	관리인		(전화번호 :)		설치년도						
	규모		부 지 : m', 화장실 면적 : m'								
시설내역	시설내역	대변기 수			소변기 수		대변기 유형				
		남자용	여자용	장애인용	성인용	유아용	동양식	서양식			
	편의시설	세면기	에어타올 (페이퍼타올)	환풍기	화장지		비누		방향제		
					유	무	유	무	유	무	
1회 사용료		원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수수료	
										없 음	

【별지 제3호 서식】

제 호								
유 료 화 장 실 신 고 필 증								
대 표 자	상 호(명칭)							
	성 명							
	주 소							
관 리 인		(전화번호 :)						
시 설 내 역	시 설 내 역	대변기 수			소변기 수		대변기 유형	
		남자용	여자용	장애인용	성인용	유아용	동양식	서양식
	편 의 시 설	세면시설		에어타올 (페이퍼타올)		환 풍 기		
		대		대		대		
1회 사용료		원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인								

□ 제안이유

-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과 동법시행령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구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함.

□ 주요내용

- 편의용품의 비치·제공 (안 제8조)
 -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편의용품을 비치 제공하여야 한다
- 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 (안 제9조)
 -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자는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 개방화장실의 지정 (안 제12조)
 - 구청장은 화장실중 다수인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장소와 시설의 화장실에 대하여 개방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규 칙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윤 태 진

2005년 5월 4일

인천광역시남동구 규칙 제 636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관련 【별표1】 사무분장표의 총무과 분장사무 중 “46. 일제강점하 강제동원에 관한 사무”를 신설하고, 세무과 분장사무 중 “제21호”내지 “제2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현행 “제21호” 내지 “제27호”를 “제 25호”내지 “제31호”로 한다

21. 개별주택가격 조사계획 수립 및 시행
22. 개별주택가격 특성조사 및 가격산정 등에 관한 사무
23. 개별주택가격 확인원 발급
24. 개별주택가격과 관련한 사무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적용한다.

□ 제안이유

- '05년부터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에 따른 주택가격 공시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주택가격 조사·산정에 따른 업무 및 특별법에 의거 일제강제동원피해 접수 등 신규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업무를 신설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총무과내 “일제강점하 강제동원에 관한 업무” 신설
- 세무과내 “과표팀” 신설에 따른 분장사무 신설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윤 태 진

2005년 5월 4일

인천광역시남동구 규칙 제 637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관련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기관별 · 직급별 정원(제2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현행						개정안					
	총계	본청	의회 사무국	직속 기관	출장소	동	총계	본청	의회 사무국	직속 기관	출장소	동
총계	723	453	19	40	16	195	728	458	19	40	16	195
정무직 계	1	1					현행과 같음					
구청장	1	1										
일반직 계	626	397	11	36	15	167	631	402	11	36	15	167
3급 소계	1	1					현행과 같음					
행정	1	1										
4급 소계	5	3	1	1								
행정	2	1	1									
시설	1	1										
행정·임업	1	1										
보건·의무	1			1								
5급 소계	41	16	2	5	1	17						
행정	23	10	2		1	10						
의무	4			4								
토목	1	1										
건축	1	1										
행정·전산	2					2						
행정·보건	1					1						
행정·환경	1					1						
행정·토목	1	1										
행정·지적	1	1										
행정·보건·간호	1			1								
행정·보건·환경	1	1										
행정·토목·임업	2	1				1						
행정·화공기계·환경	1					1						
행정·임업·토목·지적	1					1						
6급 소계	115	87	3	5	3	17	115	87	3	5	3	17
행정	74	53	3		1	17	73	52	3		1	17
세무	2	2					현행과 같음					
전산	1	1										
임업	1	1										
보건	1	1										
토목	3	3										
건축	3	3										
지적	2	2										
통신	1	1										
행정·세무	4	4					5	5				
행정·사회복지	1	1					현행과 같음					

기관별 직급별	현행						개정안					
	총계	본청	의회 사무국	직속 기관	출장소	동	총계	본청	의회 사무국	직속 기관	출장소	동
행정·기계	1				1		현행과 같음					
행정·화공	1	1										
행정·농업	1	1										
행정·임업	1				1							
행정·보건	2	2										
행정·환경	2	2										
행정·토목	1	1										
행정·지적	1	1										
임업·토목	1	1										
보건·의료기술	1			1								
의료기술·간호	1			1								
토목·건축	3	3										
행정·전기·건축	1	1										
행정·보건·간호	1			1								
행정·환경·화공	1	1										
행정·토목·건축	1	1										
보건·의료기술·간호	1			1								
보건·약무·간호	1			1								
7급 소계	181	126	5	7	4	39	183	128	5	7	4	39
행정	100	58	5		2	35	101	59	5		2	35
세무	11	11					12	12				
사회복지	7	3				4	현행과 같음					
전산	2	2										
기계	2	2										
전기	3	3										
화공	1	1										
농업	1	1										
임업	3	3										
수산	1	1										
보건	4	3		1								
의료기술	1			1								
간호	4			4								
환경	5	5										
토목	16	15			1							
건축	11	10			1							
지적	5	5										
화공·환경	1	1										
축산·수의	1	1										
보건·약무	1			1								
통신기술·전자통신기술	1	1										

기관별 직급별	현행						계정안											
	총계	본청	의회 사무국	직속 기관	출장소	동	총계	본청	의회 사무국	직속 기관	출장소	동						
8급 소계	193	121		10	5	57	196	123		10	6	57						
행정	95	58		1	2	34	96	59		1	2	34						
세무	22	22					24	24										
사회복지	28	5				23	현행과 같음											
전산	4	4																
기계	2	1			1													
전기	1	1																
화공	2	2																
농업	1	1																
임업	2	2					2	1			1							
축산	1	1					현행과 같음											
수산	1	1																
보건	8	4		4														
의료기술	2			2														
간호	3			3														
환경	4	3			1													
토목	8	8																
건축	4	3			1													
지적	3	3																
통신기술·전자통신기술	1	1																
보건·환경	1	1					현행과 같음											
9급 소계	90	43		8	2	37							90	44		8	1	37
행정	51	21			1	29							현행과 같음					
세무	5	5																
사회복지	8					8												
전산	1	1																
전기	1	1																
임업	3	2			1													
보건	3			3									현행과 같음					
의료기술	4			4														
식품위생	1			1														
환경	1	1																
토목	5	5																
건축	4	4																
지적	1	1																
보건·환경	2	2																
별정직 계	1	1					현행과 같음											
7급상당 소계	1	1																
수행비서	1	1																

기관별 직급별	현행						개정안					
	총계	본청	외화 사무국	직속 기관	출장소	동	총계	본청	외화 사무국	직속 기관	출장소	동
기능직 계	95	54	8	4	1	28	현행과 같음					
6급 소계	3	3										
전기	1	1										
기계	1	1										
조무	1	1										
7급 소계	5	4				1						
기계	1	1										
운전	3	3										
조무(조무)	1					1						
8급 소계	12	10	2									
전기	1	1										
기계	3	2	1									
운전	3	3										
사무보조(필기)	1		1									
조무(조무)	4	4										
9급 소계	25	16	5	1		3						
건축	1	1										
교환	1	1										
운전	9	4	1	1		3						
사무보조(필기)	2		2									
사무보조(사서)	1	1										
조무(조무)	10	9	1									
사무보조(별도)조위(조위)	1		1									
10급 소계	50	21	1	3	1	24						
기계	1	1										
운전	18	2		1	1	14						
전산												
간호조무	1			1								
조무(조무)	19	7	1	1		10						
조무(교통지도)	3	3										
조무(지도)	6	6										
사무보조(별도)조위(조무)	2	2										

□ 제안이유

- '05년부터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에 의하여 주택을 토지건물 통합시가로 평가하여 과표로 산정하는 주택가격 공시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주택가격 조사·산정의 신규업무 수행을 위한 전담기구 및 인력보강 필요
- 특별법에 의거 일제강제동원 피해 접수 등 신규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담인력 보강
- 부서별 정원의 합리적인 조정을 통해 조직의 효율성 증대를 도모코자 함

□ 주요내용

- 제2조 관련 [별표]의 기관별·직급별 정원중
 - 총계 본청 정원을 “453명”에서 “458명”으로 5명 증원하고
 - 일반직 정원 증원에 따른 정원조정
 - 과표팀 신설(세무과) : 4명 증원,
 -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접수 신설 업무담당(총무과) : 1명 증원
 - 업무비중에 따른 직급 정원조정
 - 임업8급 1명(도시정비과) ⇔ 임업 9급 1명(공단출장소)

인천광역시남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시행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윤 태 진

2005년 5월 4일

인천광역시남동구 규칙 제 638호

인천광역시남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난관리 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정적립액의 산출기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매년도 법정 적립액 산출은 인천광역시남동구의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년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 ① 기금은 매 회계연도 본 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확보된 기금은 국가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자연재난기간 시작 이전까지 재난관리기금 계좌에 전액 예탁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 ① 증식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은 기금 재증식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당해연도 예방사업 등의 충당금으로 예탁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사용잔액이나 그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후 1월 이내에 증식용 기금계좌에 예탁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기금의 용자 신청 등) ① 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용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 용자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 후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통보하여야 한다.

③ 용자대상자로 결정된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서약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용자대상자에 대하여 근저당설정 등 채권확보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6조(용자의 조건 등) ① 조례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임차비용은 다음 각호의 조건으로 용자할 수 있다.

② 용자기간은 2~3년거치 3~5년 균등상환 단,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용자이율은 연리 3~5%로 하되 변동금리로 하고 거치기간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기금을 용자 받은자(이하 “채무자”라 한다)가 상환기간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구금고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용자금의 상환) ① 구청장은 채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전이라도 용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용자를 받았을 경우
2. 용자금을 용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3. 용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4. 관계법령 및 용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자금 반환 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반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 상환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채무자가 제2항에서 규정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상환기간의 연장) ① 채무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의 범위내에서 연장하여 줄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간 만료 30일전까지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융자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해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의 소요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② 구금고로 하여금 융자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위탁사무수행수수료, 사무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제10조(기금의 사용요청) ①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실,과,소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심의요구서를 작성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제1항 규정에 의한 심의요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안건 심의결과를 관련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회의록) 위원장은 간사로 하여금 다음 각 호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도록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직·성명
3. 심의의결서 【별지 제5호서식】

제12조(기금의정산 등)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을 융자받은 자는 사업을 완료하였을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사업완료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을 지원받은 실,과,소장은 사업을 완료하였거나 기금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사업완료 또는 취소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그사업의 완료보고서 또는 정산서를 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집행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정산서를 제출 할 때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연도를 넘어 사업비를 계속 집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3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기금의 운용계획수립 및 결산은 기금운용 주관 부서(재난 업무담당)가 작성하여 남동구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장부의 비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1.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 【별지 제6호서식】
2. 재난관리기금 수입금 관리대장 【별지 제7호서식】
3. 재난관리기금 지출금 관리대장 【별지 제8호서식】
4. 재난관리기금 적립금(증식기금) 관리대장 【별지 제9호서식】
5. 재난관리기금 적립금(사업비 충당금) 관리대장 【별지 제10호서식】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 폐지) 인천광역시남동구재해대책기금및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시행규칙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별지 1호 서식】

재난관리기금 융자신청서

(단위 : 원)

대상자	성명 (대표자)		주민등록 번호		전화번호	
재난시설(지역)명		(등급 : 급)				
임대주택명(주소)						
임대주택규모		㎡(평)				
임대기간		. . . ~ . . .				
임대비용		총 천원				
· 자기부담금		천원				
· 구.군 융자금		천원				
융자신청 금액		융자 희망일		담보능력		

인천광역시남동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제7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5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재난관리기금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귀하

[첨부] 임대계약서 사본 1부

【별지 2호 서식】

재난관리기금 융자결정 통지서

1. 융자지원여부 :

※ 융자불가시 불가사유:

2. 융자대상

신청자	성명 (대표자)	
	주소	
재난위험	시설명	
	위치	
시설	조치내용	

3. 지원내용

자금용도	총사업 (이주)비	융자 신청서	융자 결정액	융자조건		상환조건	대출취급 기관
				대출기간	이자		
	천원	천원	천원	년 (거치년)	연리 %		

비고) 1. 연체이율은 연리 %로 한다.

2. 융자신청자는 융자결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대출을 완료하여야 한다.

3. 융자를 받은 자가 그 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대출기간에 관계없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조기에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별지 3호 서식】

서 약 서

금 원정 (₩)

위의 금액을 로 융자함에 있어 인천광역시남동구재난
관리 기금운용관리조례시행규칙 제5조3항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
할 것을 서약하며 이 증서를 제출합니다.

아 래

1. 융자금은 지정된 용도 외에는 사용하지 아니하겠음.
2. 융자금 지원과 관련된 법령, 남동구 조례, 규칙 등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준수 하겠음.
3. 위의 각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어떠한 조치를 하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출하지 않겠음.

년 월 일

서 약 자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성 명 :

※ 인감증명서 1부 첨부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귀하

【별지 4호 서식】

재난관리기금 사용에 대한 심의 요구서

건 명 :

기금용도 : 재난관리기금

위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인천광역시남동구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별지제4호의 부표)
2. 기타(현황사진 등)

【별지 4호서식의 부표】

사 업 계 획 서

1. 사 업 명 :

2. 사업목적 또는 필요성

3. 사업개요

가. 기 간 :

나. 위 치 :

다. 내 역 :

4. 소요사업비 : 천원

5. 재원확보계획

(단위:백만원)

재 원 별	계	국 비	시 비	구 비	기 타
계					
일반회계					
기 금					
기 타					

6. 사업효과

【별지 5호 서식】

심 의 의 결 서													
안	건												
일	시	년	월	일	장	소							
심의내용													
☐ 의결사항 ○ 심의대상 총 건 가결 : 건, 조정 : 건, 부결 : 건, 기타 : 건 위와 같이 의결 함. 년 월 일 인천광역시남동구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 참석위원													
구	분	직	위	성	명	서명날인	구	분	직	위	성	명	서명날인

□ 제안이유

- 인천광역시남동구재해대책및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가 폐지되고, 새로이 제정된 인천광역시남동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주요내용

- 법정적립액의 산출기준(안 제2조)
- 기금의 확보 및 적립 시기(안 제3조)
- 기금의융자 신청 등(안 제5조)
- 융자기간 및 융자이율 등 융자의 조건 규정(안 제6조)
- 상환기간전에 융자금의 상환 할 수 있는 경우 명시(안 제7조)
- 상환기간의 연장 : 채무자가 부득이한 경우로 기한내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 될 경우에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년 범위 내에서 연장하여 줄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 융자업무의 위탁(안 제9조)
- 기금을 지원 받고자하는 실·과 및 소장은 심의요구서를 작성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토록하고 심의요구서를 접수 한 때에는 안전 심의결과를 관련부서의 장에게 통보토록 함(안 제10조)
- 기금의정산 등(안 제12조)

훈 령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을 이에 발령한다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윤 태 진

2005년 5 월 4일

인천광역시남동구 훈령 제 215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일부개정규정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관련 【별표1】 , 【별표4】 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별표1]

구분청 각실 · 과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

구 분	직 중	계급	현행		개정안	
			정원	직급별 내역	정원	직급별 내역
합 계			453		458	
기 획 감사실	계		31			(현행과 같음)
	일반직	소계	31			
		5급	1	행정1		
		6급	8	행정7, 전산1		
		7급	12	행정9, 전산2, 토목1		
		8급	9	행정6, 전산3		
		9급	1	행정1		
문 화 홍보실	계		21			(현행과 같음)
	일반직	소계	19			
		5급	1	행정1		
		6급	5	행정5		
		7급	6	행정6		
		8급	5	행정5		
		9급	2	행정2		
	기능직	소계	2			
		8급	1	기계1		
		10급	1	조무(조무)1		
총무과	계		37		38	
	정무직	-	1	(구청장)1	1	(구청장)1
	일반직	소계	32		33	
		3급	1	행정1	1	행정1
		4급	1	행정1	1	행정1
		5급	1	행정1	1	행정1
		6급	8	행정7, 통신1	8	행정7, 통신1
		7급	7	행정6, 통신기술전자통신기술1	8	행정7, 통신기술전자통신기술1
		8급	11	행정10, 통신기술전자통신기술1	11	행정10, 통신기술전자통신기술1
		9급	3	행정3	3	행정3
	별정직	소계	1		1	
		7급	1	일반비서1	1	일반비서1
	기능직	소계	3		3	
		8급	1	조무(조무)1	1	조무(조무)1
		9급	1	교환1	1	교환1
		10급	1	조무(조무)1	1	조무(조무)1

구 분	직 중	계급	현행		개정안	
			정원	직급별 내역	정원	직급별 내역
경영 재정과	계		27			(현행과 같음)
	일반직	소계	15			
		5급	1	행정1		
		6급	4	행정4		
		7급	5	행정4, 전기1		
		8급	3	행정3		
		9급	2	행정2		
	기능직	소계	12			
		6급	1	기계1		
		7급	3	운전3		
		8급	2	운전2		
		9급	3	운전2, 조무(조무)1		
		10급	3	운전2, 조무(조무)1		
재난안전 관리과	계		17			(현행과 같음)
	일반직	소계	14			
		5급	1	행정1		
		6급	4	행정3, 행정·토목·건축1		
		7급	5	행정3, 토목1, 건축1		
		8급	3	행정2, 기계1		
		9급	1	행정1		
	기능직	소계	3			
		8급	3	전기1, 기계1, 조무1		
세무과	계		48		52	
	일반직	소계	46		50	
		5급	1	행정1	1	행정1
		6급	6	세무2, 행정·세무4	7	세무2, 행정·세무5
		7급	11	세무11	12	세무12
		8급	23	세무22, 전산1	25	세무24, 전산1
		9급	5	세무5	5	세무5
	기능직	소계	2		2	
		9급	2	조무(조무)2	2	조무(조무)2

구 분	직 종	계급	현행		개정안	
			정원	직급별 내역	정원	직급별 내역
민 원 지적과	계		36			(현행과 같음)
	일반직	소계	34			
		5급	1	행정·지적1		
		6급	6	행정3, 지적2, 행정·지적1		
		7급	11	행정6, 지적5		
		8급	10	행정7, 토목1, 지적3		
		9급	5	행정4, 지적1		
	기능직	소계	2			
		9급	2	사무보조(사서)1, 조무(조무)1		
사 회 복지과	계		24			(현행과 같음)
	일반직	소계	23			
		4급	1	행정·임업1		
		5급	1	행정1		
		6급	5	행정4, 행정·사회복지1		
		7급	7	행정4, 사회복지3		
		8급	7	행정2, 사회복지5		
		9급	2	행정2		
	기능직	소계	1			
		10급	1	사무보조(워드)·조무(조무)1		
청소과	계		25			(현행과 같음)
	일반직	소계	18			
		5급	1	행정1		
		6급	5	행정3, 행정·환경2		
		7급	7	행정5, 환경2		
		8급	4	행정2, 환경2		
		9급	1	환경1		
	기능직	소계	7			
		6급				
		7급				
		8급	2	운전1, 조무(조무)1		
		9급	3	운전2, 조무(조무)1		
		10급	2	조무(조무)2		

구 분	직 종	계급	현행		개정안	
			정원	직급별 내역	정원	직급별 내역
환경 위생과	계		27			(현행과 같음)
	일반직	소계	26			
		5급	1	행정·보건·환경1		
		6급	5	행정1, 보건1, 행정·보건2, 행정·환경·화공1		
		7급	8	행정1, 보건3, 환경3, 화공·환경1		
		8급	9	행정2, 화공1, 보건4, 환경1, 보건·환경1		
		9급	3	행정1, 보건·환경2		
	기능직	소계	1			
		9급	1	조무(조무)1		
지역 경제과	계		23			(현행과 같음)
	일반직	소계	23			
		5급	1	행정1		
		6급	5	행정3, 행정·화공1, 행정·농업1		
		7급	9	행정2, 기계2, 전기1, 화공1, 농업1, 수산1, 축산·수의1		
		8급	6	행정2, 화공1, 농업1, 축산1, 수산1		
		9급	2	행정2		
건설과	계		28			(현행과 같음)
	일반직	소계	23			
		4급	1	시설1		
		5급	1	토목1		
		6급	4	행정1, 토목2, 행정·토목1		
		7급	8	행정1, 전기1, 토목6		
		8급	5	행정2, 토목3		
		9급	4	전기1, 토목3		
	기능직	소계	5			
		6급	1	전기1		
		7급	1	기계1		
		8급				
		10급	3	기계1, 조무(조무)2,		
건축과	계		29			(현행과 같음)
	일반직	소계	25			
		5급	1	건축1		
		6급	6	행정1, 건축3, 토목·건축1, 행정·전기·건축1		
		7급	9	행정1, 건축8		
		8급	4	행정1, 전기1, 건축2		
		9급	5	토목1, 건축4		
	기능직	소계	4			
		8급	1	조무(조무)1		
		9급	2	건축1, 조무(조무)1		
		10급	1	조무(지도)1		

구 분	직 종	계급	현행		개정안	
			정원	직급별 내역	정원	직급별 내역
도 시 정비과	계		23		23	
	일반직	소계	19		19	
		5급	1	행정·토목·임업1	1	행정·토목·임업1
		6급	4	행정2, 임업1, 임업·토목1	4	행정2, 임업1, 임업·토목1
		7급	7	행정3, 임업3, 토목1	7	행정3, 임업3, 토목1
		8급	3	행정1, 임업2	2	행정1, 임업1
		9급	4	행정1, 임업2, 토목1	5	행정1, 임업3, 토목1
	기능직	소계	4		4	
		9급	2	조무(조무)2	2	
		10급	2	조무(지도)2	2	
교통과	계		34			(현행과 같음)
	일반직	소계	29			
		5급	1	행정1		
		6급	7	행정7		
		7급	5	행정5		
		8급	13	행정12, 토목1		
		9급	3	행정2, 전산1		
	기능직	소계	5			
		6급	1	조무(조무)1		
		10급	4	조무(교통지도)3, 사무보조(워드)·조무(조무)1		
도 시 계획과	계		23		23	
	일반직	소계	20		20	
		5급	1	행정·토목1	1	행정·토목1
		6급	5	행정2, 토목1, 토목·건축2	4	행정1, 토목1, 토목·건축2
		7급	9	행정2, 토목6, 건축1	9	행정2, 토목6, 건축1
		8급	5	행정1, 토목3, 건축1	6	행정2, 토목3, 건축1
	기능직	소계	3		3	
		10급	3	조무(지도)3	3	조무(지도)3

[별표4]

출장소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

구 분	직 중	계급	현행		개정안	
			정원	직급별 내역	정원	직급별 내역
합 계			16		16	
출장소	계		16		16	
	일반직	소계	15		15	
		5급	1	행정1	1	행정1
		6급	3	행정1, 행정기계1, 행정임업1	3	행정1, 행정기계1, 행정임업1
		7급	4	행정2, 토목1, 건축1	4	행정2, 토목1, 건축1
		8급	5	행정2, 기계1, 환경1, 건축1	6	행정2,기계1,환경1,건축1, 임업1
		9급	2	행정1, 임업1	1	행정1
	기능직	소계	1		1	
		10급	1	운전1	1	운전1

□ 제안이유

- '05년부터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에 의하여 주택을 토지건물 통합시가로 평가하여 과표로 산정하는 주택가격 공시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주택가격 조사·산정의 신규업무 수행을 위한 전담기구 및 인력보강 필요
- 특별법에 의거 일제강제동원피해 접수 등 신규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담인력 보강
- 부서별 정원의 합리적인 조정을 통해 조직의 효율성 증대를 도모코자 함

□ 주요내용

- 제2조관련 【별표1】 , 【별표4】 의 구분청, 출장소정원을 별첨과 같이 개정한다
 - 개별주택가격평가 담당(세무과) 신설
 -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접수 신규업무 담당 정원 증원(총무과)
 - 업무비중에 따른 직급 조정(도시정비과, 출장소)

인천광역시남동구상근인력관리규정을 이에 발령한다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윤 태 진

2005년 5 월 4일

인천광역시남동구 훈령 제 216 호

인천광역시남동구상근인력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

인천광역시남동구상근인력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남동구상근인력관리규정”을 “인천광역시남동구
상근인력 관리규정”으로 한다.

제7조(정수의 총수)제1항 중 총“248명”을 “230명”으로 하며

제2항관련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상근인력의 정수표(제7조관련)

1. 300일이상 고용상근인력의 정수

부 서 별	계	단 순 노 무 원					도 로 보수원	환 경 미화원
		소 계	시 설 물 · 장 비 유 지 관 리 인 부	현 장 공 사 · 작 업 등 현 업 인 부	현 장 지 도 단 속 · 감 시 현 장 인 부	단 순 잡 역 조 무 인 부		
총 계	207	10	8	2			10	187
본청 소계	204	7	7				10	187
총 무 과	1	1	1					
재난안전관리과	2	2	2					
민원지적과	1	1	1					
청 소 과	187							187
도시정비과	3	3	3					
건 설 과	10						10	
직속기관 소계	2	2		2				
보 건 소	2	2		2				
출장소 소계	1	1	1					
남동공단출장소	1	1	1					

2. 청원경찰의 정수

부 서 별	합 계	경비청원 경 찰	단 속 감 시 청 원 경 찰			
			소 계	녹지훼손단속	노점상단속	무허가단속
총 계	23	23	-	-	-	-
본청 소계	23	23	-	-	-	-
총 무 과	23	23	-	-	-	-

상근인력의 정수표(제7조관련)

1. 300일이상 고용상근인력의 정수

개 정 안								
부 서 별	계	단 순 노 무 원					도로 보수원	환경 미화원
		소 계	시설·비 지리부 물관인부	현장·작 업인부	현장·작 업인부	단순 조인부		
총 계	207	10	8	2			10	187
본청소계	204	7	7				10	187
총 무 과	1	1	1					
재난안전관리과	2	2	2					
민원지적과	1	1	1					
청 소 과	187							187
도시정비과	3	3	3					
건 설 과	10						10	
적속기관 소 계	2	2		2				
보 건 소	2	2		2				
출장소 소계	1	1	1					
남동공단출장 소	1	1	1					

□ 제안이유

-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의 개정공포(규칙 제635호, '05.3.31)로 펌프장 관리업무가 당초 건설과에서 재난안전관리과로 이관됨에 따라 펌프장 관리를 위해 사용하던 상근인력 2명을 재난안전관리과 정수로 재배치하고자 함.
- 청소과 상근인력 자연감소(퇴직)부분을 정수에 반영코자 함

□ 주요내용

- 제7조제1항 상근인력의 정수를 총 “248명”에서 “230명”으로 함
- [별표] 상근인력의 정수표(제7조관련)의 1. 300일이상 고용상근인력의 정수 중 총무과란과 청소과란 사이에 재난안전관리과란을 삽입하여 계란 및 단순노무원란(시설물·장비유지관리인부)에 각각 “2”를 신설하고, 건설과 계란 및 도로보수원란의 “12”을 각각 “10”으로 하고, 청소과란 계란 및 환경미화원란의 “205”를 “187”로 함(안 제7조제2항)

공 고

남동구공고 2005-315호

보 상 계 획 열 람 공 고

우리구에서 시행하는 “만의골 도로개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 제15조 규정에 의거 공고 합니다.

2005. 5. 2.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사업시행자 :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2. 사업의종류와명칭 : 만의골 도로개설공사
3. 사업의규모 : L=467M, B=15M
4. 위 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수동 132-5번지 부근
5. 보상시기 : 2005. 6월
6. 보상금지급처 : 남동구청건설과
7. 보상대상
 - 토지보상 : 장수동 132-5외 5필지
 - 지 장 물 : 도로개설 구간에 저촉되는 지장물에 한함
8. 보상방법
 -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68조에 의거 보상액을 산정하고 개별로 협의체결후 현금보상
9. 보상절차 : 보상에 필요한 서류 및 보상금액은 추후 개별 통지
10. 열람기간 : 2005. 5. 2 - 2005. 5. 16(15일간)
11. 열람장소 : 남동구청 건설과
12. 기타사항
 - 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68조제2항 및 동시행령 제28조에 의거에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업자 1인을 선정할 수 있으며,
 - ② 토지조서등은 남동구청건설과에 비치하고 열람하며 이의 있으신 분은 건설과에 문의 또는 이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 ③ 이 공고에 대한 서류송달은 소유자등에 대하여 개별통지 하였으나, 미수령시 이 공고로 갈음하겠습니다.

토 지 조 서

【만의골 도로개설공사】

일련 번호	토 지 소 재 지		지목	지적 (㎡)	면적 (㎡)	소 유 자		이해관계인		비고
	동명	지 번				성 명	소	성 명	주 소	
1	장수동	77-3	임	198	198	남영자	송림정 247-7			미등기
2	장수동	77-2	임	13	13	남영자	송림정 247-7			미등기
3	장수동	110-1	전	458	458	김문영	장수동 71			
4	장수동	109-4	답	150	150	박예자	장수동 48			
5	장수동	111-2	전	332	332	김상숙	시흥시 도창동 368			지분 1/2
						김화순	시흥시 도창동 368			지분 1/2
6	장수동	139-5	전	204	204	최홍대	장수동 53			지분 1/2

【만의골 도로개설공사】

[illegible]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2005 - 316호

공 시 송 달

성 명 김명환 외 41건

주소 또는 거소 내역별첨

서 류 의 명 칭 주민세특별징수 4월 부과고지서

서 류 의 내 용 2005년4월분 주민세 특별징수 부과고지서

위 서류를 귀하에게 송달하고자 사업장 소재지로 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 및 , “이사감”, “우편물 장기방치” 등으로반송 처리되어 송달이 불능인 바, 납기를 2005.05.23일로 변경하여 남동구청에 납부하여 주시기를 지방세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2005년 5월 2일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05.04월분 주민세 특별징수 직권분 공시송달

연번	성명	주민번호	주소	과세번호	세액	비고
1	김명환		인천 남구 송의4동	104008-200504-2-510-18	85,800	주소불명
2	신종합건설 (주)		인천 남동구 구월동	104008-200504-2-510-21	51,010	반송함장기방치
3	준건설 (주)		인천 남동구 만수동	104008-200504-2-510-27	93,450	반송함장기방치
4	금재흥건설 (주)		인천 남동구 구월1동	104008-200504-2-510-28	33,360	반송함장기방치
5	남해토건(주)		인천 남동구 구월동	104008-200504-2-510-33	75,080	이사
6	(주)위맥스		인천 남동구 구월1동	104008-200504-2-510-37	35,170	반송함장기방치
7	광려리종합건설 (주)		인천 남동구 구월동	104008-200504-2-510-60	11,840	수취인미거주
8	(주) 월드종합건설		인천 남동구 간석동	104008-200504-2-530-51	29,180	타시도전출
9	와우미디어		인천 남동구 간석동	104008-200504-2-530-53	21,050	이사
10	지메이컴퓨터코리아 (주)		주소없음	104008-200504-2-560-8	23,350	이사
11	추진건설주식회사		인천 남동구 만수동	104008-200504-2-560-10	149,010	수취인미거주
12	창원종합주거관리(주)		인천 남동구 구월동	104008-200504-2-560-16	25,170	수취인미거주
13	동해이엔지		인천 남동구 만수동	104008-200504-2-560-17	66,930	수취인미거주
14	주식회사우창개발		인천 남동구 구월동	104008-200504-2-660-11	150,770	수취인미거주
15	벤딩코리아		인천 남동구 남촌동	104008-200504-2-660-13	45,030	이사
16	(주) 누리ENG		인천 남동구 고잔동	104008-200504-2-670-7	52,050	이사
17	서명석		충남 공주시 정안면	104008-200504-2-670-10	56,120	반송함장기방치
18	해인산업개발 (주)		인천 남동구 고잔동	104008-200504-2-670-14	51,810	수취인미거주
19	(주) 세광엔지니어링		인천 남동구 고잔동	104008-200504-2-670-46	23,890	이사
20	(주) 세광엔지니어링		인천 남동구 고잔동	104008-200504-2-670-47	89,440	이사
21	(주) 코리아컨퍼런스		인천 남동구 고잔동	104008-200504-2-670-48	10,160	이사
22	(주) 하에산업		인천 남동구 고잔동	104008-200504-2-670-52	28,570	수취인미거주
23	우리부동산개발 (주)		인천 남동구 고잔동	104008-200504-2-670-56	64,120	반송함장기방치
24	(주) 디앤이메스현대		인천 남동구 고잔동	104008-200504-2-670-59	33,110	이사
25	(주) 세빅코리아		인천 남동구 논현동	104008-200504-2-670-62	33,310	수취인미거주
26	우리산업엔지니어링 (주)		주소없음	104008-200504-2-670-64	164,900	반송함장기방치
27	주식회사웅나후력스		경기 안산시단원구 현서동	104008-200504-2-670-71	108,760	수취인미거주
28	우방공업(주)		인천 남동구 고잔동	104008-200504-2-670-91	34,550	수취인미거주
29	(주)수성산업		인천 남동구 고잔동	104008-200504-2-670-95	368,630	이사
30	대동엔지니어링 (주)		인천 남동구 논현동	104008-200504-2-670-98	19,870	이사
31	(주) 금보멀리베이터		인천 남동구 논현동	104008-200504-2-670-102	30,910	수취인미거주
32	정보전자 (주)		인천 남동구 고잔동	104008-200504-2-670-104	577,790	수취인미거주

33	주식회사지원테크	인천 남동구 고잔동	104008-200504-2-670-145	103,910	반송환장기방치
34	삼부금속	인천 남동구 고잔동	104008-200504-2-670-146	135,880	반송환장기방치
35	케이엔슬텍	인천 남동구 고잔동	104008-200504-2-670-158	527,730	수취인미거주
36	케이엔슬텍	인천 남동구 고잔동	104008-200504-2-670-159	539,170	수취인미거주
37	케이엔슬텍	인천 남동구 고잔동	104008-200504-2-670-160	165,930	수취인미거주
38	케이엔슬텍	인천 남동구 고잔동	104008-200504-2-670-161	599,620	수취인미거주
39	케이엔슬텍	인천 남동구 고잔동	104008-200504-2-670-162	717,000	수취인미거주
40	이성재	인천 남동구 고잔동	104008-200504-2-800-5	110,450	반송환장기방치
41	한성플레이팅테크	인천 남동구 논현동	104008-200504-2-800-8	29,850	수취인미거주
42	삼진이에스	인천 남동구 고잔동	104008-200504-2-800-10	12,900	이사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2005 - 317호

공 시 송 달

성 명 조 규 속 외 29건
주소 또는 거소 내역별첨
서 류 의 명 칭 소득할 주민세 2월분독촉고지서

서 류 의 내 용 2005년 2월분 소득할 주민세 독촉고지서

위 서류를 귀하에게 송달하고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및 사업장주소지로 등기우편 발송 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 및 “수취인 부재”, “이사감”, “우편물 장기방치”, “주소불명”등으로 반송처리되어 송달이 불능인 바, 납기를 2005.05.23일로 변경하여 남동구청에 납부하여 주시기를 지방세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2005년 5월 2일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05.2월분 소득할 주민세 독촉장 공시송달

연번	성명	주민번호	주소	과세번호	세액	비고
1	조규숙	590102	남동 만수5동 938-7	104004-0502 -560-4	108,150	수취인 부재
2	김남표	700815	남구주안2동 1417-53 한일빌라104	104005-0502 -530-10	412,900	수취인 부재
3	이길분	690422	남동 논현동 산71번지	104005-0502 -670-4	4,910	이사감
4	신현근	400725	남동 만수1동 1076 4층	104004-0504 -560-4	1,683,410	수취인 미거주
5	신현근	400725	남동 만수1동 1076 4층	104004-0504 -560-5	2,132,100	수취인 미거주
6	신현근	400725	남동 만수1동 1076 4층	104004-0504 -560-6	3,800,060	수취인 미거주
7	신현근	400725	남동 만수1동 1076 4층	104004-0504 -560-7	1,229,310	수취인 미거주
8	이구택	440907	남동 만수1동 869-4 102호	104004-0504 -560-8	7,435,350	수취인 부재
9	이구택	440907	남동 만수1동 869-4 102호	104004-0504 -560-9	979,460	수취인 부재
10	박경옥	590505	남동 만수1동 109-209	104004-0504 -560-18	222,840	수취인 부재
11	옥재건	621017	남동 만수1동 949-4 홍일다세대2/B02	104004-0504 -560-19	4,621,150	수취인 부재
12	홍옥남	700910	남동 만수1동 111-225 신화빌라A/302	104004-0504 -560-21	1,495,520	수취인 부재
13	선연호	560322	남동 구월동1208-22 102호	104005-0504 -510-20	19,960	이사감
14	김영희	290817	남동 간석224-611 간석빌라D/201	104005-0504 -530-12	107,520	수취인 부재
15	강영수	570124	남동 간석35-25 두원파크빌101/B03	104005-0504 -530-22	182,000	수취인 부재
16	이병윤	600125	남동 간석233-4	104005-0504 -530-27	13,110	이사감
17	김유순	630328	남동 간석74-5 2층	104005-0504 -530-32	351,940	수취인 부재
18	박인호	690408	남동 간석37-188 대영빌라B/201	104005-0504 -530-36	150,750	수취인 부재
19	박인호	690408	남동 간석37-188 대영빌라B/201	104005-0504 -530-37	258,400	수취인 부재
20	최덕환	700224	남동 간석179-6 태화프라자8층	104005-0504 -530-38	139,880	수취인 부재

05.1월분 소득할 주민세 독촉장 공시송달

연번	성명	주민번호	주소	과세번호	세액	비고
21	김주연	860109	남동 간석37-32 청양빌라A/401	104005-0504 -530-39	538,000	이사감
22	신현근	400725	남동 만수1동 1076 4층	104005-0504 -560-18	484,540	수취인 미거주
23	김범	530213	남동 만수1동 110-46	104005-0504 -560-24	51,710	우편물 장기방치
24	박상수	580201	만수1동 902 삼용아파트B/308	104005-0504 -560-31	276,600	수취인 부재
25	김관희	590523	만수5동 898-40 경인아트빌 다/308	104005-0504 -560-32	1,084,880	수취인 부재
26	한인숙	620205	만수1동 49-7	104005-0504 -560-35	957,800	수취인 부재
27	김영순	561129	남동구 만수동 산8-2	104005-0504 -560-42	26,350	우편물 장기방치
28	이춘홍	570201	남동구 서창동204-8 삼화빌라3/301	104005-0504 -650-5	75,580	이사감
29	심용식	530407	남동 논현559-15 301호	104005-0504 -670-7	232,380	수취인 부재
30	이완규	600220	남동 논현577 소래마을풍림110/1604	104005-0504 -670-9	120,510	수취인 부재
		이	하	여	백	

남동구보건소공고

인천광역시 남동구보건소 공고 제2005-12호

검사시약및재료구입 전자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검사시약및재료구입

나. 구입 품명, 규격 및 수량 : 총79종 붙임 참조

2. 입찰방법 : 최저가 총액 전자 입찰

3. 입찰등록마감일시 : 2005. 05. 17(화) 18:00

4. 입찰일시 및 장소 : 2005. 05. 18(수) 10:00 인천광역시남동구보건소입찰집행관PC

5.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구비한자로, 약사법 제35조 규정에 의거 의약품도매상 허가를 득하고, 우수약품 유통 관리기준(KGSP)제도에 의한 적격업소로 지정된 자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고, 소정의 구비 서류를 갖추어 전자입찰등록을 필한 자에 한한다.

6. 입찰참가자격제한

가. 지역제한 : 인천지역에 주된 영업소를 둔 자

7. 입찰참가신청서류

가. 전자입찰서를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시행규칙 제43조 규정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참가신청서에 기재된 입찰보증금 납부이행확약서로 갈음하고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국고에 귀속됩니다.

9. 입찰의 무효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및 시행규칙 제44조 및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무효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10.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이하 최저가 응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 최저가로 낙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추첨에 의하여 최종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1. 낙찰자 통보 : 입찰일시 후 낙찰자 결정과 함께 낙찰 통보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2. 납품일시 및 조건

가.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30일이내

나. 납품장소 : 당 보건소

13. 기타사항

-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거 집행하므로 조달청 이용자 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나.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입찰유의서, 조달청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계약일반조건 및 추가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예산금액은 일금삼천삼십구만삼천일백일십원입니다.
- 라.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만약 기간내 계약을 체결하지 못 할 시 차순위자와 계약함과 동시에 행정제제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 마. 낙찰자는 대금청구시 청구금액의 1.5%에 해당하는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구 보건소 보건행정팀(☎032-453-277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5. 05. 03 .

인천광역시남동구보건소경리관

검사시약 및 재료구입 품목, 규격, 수량

번호	품 명	규 격	단 위	제조사	수 량
1	A- HBs Ag	10*10T	BOX	아산	10
2	A- HBs Ab	10*10T	BOX	아산	30
3	701 D-Bilirubin	10*20ml	BOX	아산	3
4	701 T-Bilirubin	10*20ml	BOX	아산	3
5	701 GOT	8*25ml	BOX	아산	7
6	701 GPT	8*25ml	BOX	아산	7
7	701 Albumin	2*100ml	BOX	아산	6
8	701 T. Protein	2*100ml	BOX	아산	6
9	701 ALP	8*25ml	BOX	아산	2
10	701 r-GTP	8*25ml	BOX	아산	2
11	701 BUN	8*25ml	BOX	아산	2
12	701 Creatine	10*20ml	BOX	아산	2
13	701 Uric acid	8*25ml	BOX	아산	2
14	701 TG	8*25ml	BOX	아산	2
15	704 T-Chol	4*90ml	BOX	아산	4
16	704 HDL-Chol R1	2*45ml	BOX	아산	4
17	704 HDL-Chol R2	2*15ml	BOX	아산	3
18	701 Glucose	8*25ml	BOX	아산	1
19	A- RF	100T	BOX	아산	1
20	ABO혈액형(Rh)	10ml	BOX	아산	5
21	Accu-chek Active glucostick	50T	BOX	로슈	60
22	Accu-chek Active건전지	EA			4
23	Urine stick GP-2 (2종)	100T	BOX	영동	30
24	Uriscan (10종)	100T	BOX	영동	5
25	Immersion oil	100ml	Bottle	Merck	5
26	Vacurette(SST)	5ml	BOX	Greiner bio one	5
27	75% 알코올	18ℓ	Bottle		1
28	Gram stain	500mg*4	SET	영동	5
29	HIV Rapid	100T	KIT	아산	1
30	A-Easy Syphilis	25T	BOX	아산	1
31	클라미디아	25T	BOX	아산	60
32	CBC Control Serum	2ml	통	메디스타	24
33	CBC Hemolysing	3*500ml	통	Celltac	3
34	CBC Detergent	5ℓ	Bottle	Celltac	2
35	CBC Diluent	18ℓ	Bottle	Celltac	3
36	란셋(보호뚜껑)	200pcs	BOX		10
37	1회용 주사기	5cc*100	BOX	보인	40
38	주사침	25G*100's	BOX		1
39	S-F broth	500g	Bottle	Merck	1
40	Pepton	500g	Bottle	BBL	1
41	API 20E Reagent(시약포함)	SET	SET	Biomerieux	1
42	API Staph(시약포함)	SET	SET	Biomerieux	1
43	Staphy. Enrichment broth(10	500g	Bottle	Merck	1
44	EMB(101247)	500g	Bottle	Merck	1

45	SIM(105477)	500g	Bottle	Merck	1
46	완제품 CIN agar	10T		아산	5
47	완제품 MYP agar	10T		아산	5
48	완제품 PALCAM	10T		아산	5
49	완제품 TSC	10T		아산	5
50	완제품 Blood agar	10T		아산	10
51	Disposable Loop(1ul)	30*33	BOX	DIFCO	5
52	Disposable Neddle	30*33	BOX	DIFCO	1
53	Oxidase reagent(55635)	0.75ml*50	BOX	Biomerieux	1
54	0.9N saline	20ml*50	BOX	Biomerieux	2
55	Genbox jar	7L	BOX	Biomerieux	1
56	Genbox jar	2.5L	BOX	Biomerieux	1
57	Genbox anaer	10T	BOX	Biomerieux	10
58	Anaerobic indicator	50T	BOX	Biomerieux	2
59	무균채수병	2L*100	BOX	Y&K	1
60	원터치수송배지 (스폰지)	50T	BOX	유한킴벌리	10
61	나스코멸균백(BO1195)	8.5*30*500e	BOX		1
62	음식물수거지퍼백	5*30*20e	BOX	지퍼백	5
63	Petrdish	87*500	BOX	녹십자	5
64	Slide (no name)	50EA*	BOX	독일	50
65	증류수	10*1000ml	BOX	중외	50
66	알콜램프	EA	Bottle		10
67	막대온도계	EA	Bottle		10
68	여과지	200mm	BOX	Advantec	1
69	덴탈마스크	50EA	BOX	유한킴벌리	1
70	가아제	5*5	BOX		10
71	가아제	10*10	BOX		20
72	안티셴	20팩	BOX		4
73	EDTA 3K	3ml*100	BOX	Tapval	16
74	1회용 폴리위생장갑	M*200매	BOX	대진통상	50
75	검체 1회용종이컵	1000EA	BOX		3
76	킴와이프스	150매*30	BOX	유한킴벌리	5
77	킴텍스 대형	150매	BOX	유한킴벌리	4
78	알루미늄 호일	30m	BOX		10
79	Cuottrette(수세미)				10